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68호

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적성검사기관인 병·의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,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의 근거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료적성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(안 제7조제4항)
- 나.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 근거규정을 수정(안 제16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교통서비스 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 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816 / 팩스 : 044-201-5581
- 이메일 : deoks77@korea.kr